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350,226,685	70,506,801
일반회계	1,991,142,116	59,734,263
특별회계	359,084,569	10,772,537
공기업특별회계	267,491,198	8,024,73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2,751,675	3,082,5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4,739,523	4,942,186
기타특별회계	91,593,371	2,747,801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933,422	238,003
수질개선특별회계	10,843,114	325,293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7,902,649	537,079
기반시설특별회계	123,162	3,695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52,694	1,58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9,864	1,19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06,646	12,199
주택사업특별회계	239	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52,138,281	1,564,148
지하수특별회계	1,661,964	49,859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491,336	14,74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628,20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 조정교부금, 인센티브 재정보전금, 특정목적 기부금, 외부기관 특정목적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